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핵심부품 및 플랫폼 상용화 기술을 통해 구미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웨어러블 분야의 거점센터인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를 2018년 4월 준공하였음.
- 나. 상용화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 장비구축과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 대 표 : 장세용
 - 소 재 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 출연예정액 : 금2,060,000천원(도비 618,000, 시비 1,442,000)
- ※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5차년도 장비구축 및 운영비

나. 주요 사업

- 사업명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 사업기간 : 2016. 10 ~ 2020. 12.(5년)
- 위치 : 구미시 구미대로 350-27(금오테크노밸리 內)
- 총사업비 : 1,276.59억원(국비 817.38 지방비 93 민자 366.21)
- ※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165.79억(센터구축46, 장비구축 97.58, 운영비22.21)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재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	총계	1,276.59	80.58	263.43	289.92	313.82	328.84
	국비	817.38	40	153.8	192.92	208.42	222.24
	도비	32.8	13.75	4.95	2.4	5.52	6.18
	시비	60.2	6.83	20.47	5.6	12.88	14.42
	민자	366.21	20	84.21	89	87	86
연구개발	소계	1,110.8	60	237.8	265.92	264.84	282.24
	국비	744.8	40	153.8	176.92	177.84	196.24
	민자	366	20	84	89	87	86
센터구축	소계	46	20.58	25.42	-	-	-
	국비	-	-	-	-	-	-
	도비	18.7	13.75	4.95	-	-	-
	시비	27.3	6.83	20.47	-	-	-
장비구축	소계	97.58	-	-	21.4	41.58	34.6
	국비	72.58	-	-	16	30.58	26
	도비	7.5	-	-	1.62	3.3	2.58
	시비	17.5	-	-	3.78	7.7	6.02
센터운영	소계	22.21	-	0.21	2.6	7.4	12
	도비	6.6	-	-	0.78	2.22	3.6
	시비	15.4	-	-	1.82	5.18	8.4
	민자	0.21	-	0.21	-	-	-

- 사업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
- 전담/주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사업내용
 - 기반구축사업 : 상용화지원센터 리모델링 구축(4층, 4,167m²)
 - 연구개발(국가직접수행) : 소재부품 및 플랫폼 기술 개발
 - 중소기업 특화형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상용화를 위한 성능평가/실증화 장비(13종) 구축 및 기술지원
 - 웨어러블 산업 핵심분야(디바이스, 서비스) 앵커기업 유치
 - 전문기업 발굴 후 시장진입 지원을 통한 기업 육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14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기재부) : '14. 4. 11
 -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B/C 1.02) : '15. 11. 23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승인 : '16. 3. 2
 - 상용화지원센터 구축(리모델링) 설계용역 실시 : '16. 11월
 - 상용화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착공 : '17. 8월
 - 상용화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 '18. 4월
 - 3차년도 장비구축 및 운영 : '18. 10월
 - 4차년도 장비구축 및 기술지원·기업공동 R&D 추진 : '19년~
 -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 거점화, 선도기업 창출 : '20년~

다. 출연의 필요성

- 대통령의 지역공약(경북-① IT융복합신산업벨트 조성) 사업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를 웨어러블 성과확산의 거점기관으로 활용하고 지역 강소기업의 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웨어러블 실증환경 및 구축장비를 이용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전문기관과 기업들의 산·학·연 간 기술정보 공유 및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1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2013. 3. 23.>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관리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소관 실·과		신산업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지 영 목
	담 당	채 창 수
	담 당 자	손 현 경 (480-6172)